
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각종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(“재단”이라 한다) 정관 제25조에 의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“수당”이라 함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관련하여 각종 자문 및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.
② “여비”라 함은 운임·일비·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.
③ “위원 등”이라 함은 이사·감사·분과위원 등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회의와 자문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수당지급) ①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회의 및 자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.
1. 재단 규정상의 이사·감사·분과위원 등
2. 제1호의 위원 등 이외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 재단에서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참석을 요청한 사람
3.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어 자문을 의뢰받거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

제4조(수당지급기준) 수당의 지급기준은 [별표1]과 같다.

제5조(여비지급) ① 제3조의 위원 등이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여비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, 외국인의 경우 가급에 준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1]

각종 위원 등 수당 지급기준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· 이사·감사 · 전문위원 · 분과(자문)위원	1일	· 기본료: 250,000원 · 초과: 50,000원	· 기본료: 2시간 기준 · 초과: 2시간 이상 일 때 - 1회에 한하여 인정
· 전문가(외부) · 관계공무원 · 보존협의회 위원	1일	· 기본료: 250,000원 · 초과: 50,000원 ※ 초과 50,000원 / 시간당	· 기본료: 2시간 기준 · 초과: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적용
· 외국인 · 자문역 및 전문가 등	1일	당해 초청인사의 지위와 능력 등을 고려 센터장이 별도 결정	
· 서원관계자 및 주민대표 간담회	1일	· 기본료: 100,000원 · 초과: 50,000원	· 기본료: 2시간 기준 · 초과: 2시간 이상 일 때 - 1회에 한하여 인정
·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	1일	· (지방자치인재개발원)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	

※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나 교통비 실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를 따른다.

<교통비 지급기준>

반경	지급액	해당 서원(회의장소 기준)		
		대전기준	서울기준	기타
100km 이내 ※ 경내는 지급하지 않음	50,000원	돈암, 무성, 남계	-	반경 확인 후 적용
200km 이내	90,000원	소수, 옥산, 도산, 필암, 도동, 병산	소수, 도산, 병산, 돈암	
300km 이내	130,000원	-	남계, 옥산, 필암, 도동, 무성	